

2020년도 제2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0. 10. 17.(토)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임용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20. 10. 17.(토) 10:00 ~

시험명	계급	시험과목수	시험시간(분)	비고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7 과목	10:00 ~ 12:20 (140분)	09:20까지 입실완료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 지도사, 9급	3 과목	10:00 ~ 11:00 (60분)	

2. 시험장소 : 아름중학교

시험명	계급 / 직렬(직류)	응시번호 (시작번호 ~ 끝번호)	수용 인원	시험장(학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행정(일반)	71100001 ~ 71100239	239	아름중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167) ☎ 044-902-1000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보건연구(공중보건)	81100001 ~ 81100210	278	
	지도사 농촌지도(농업)	73100001 ~ 73100057		
	9급 공업(일반기계)	31200001 ~ 31200008		
	9급 공업(일반화공)	33100001 ~ 33100003		

3. 응시자 주의사항 [시험당일 09:20부터 수험생 방송교육]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

- 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학교)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나.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 확인 후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인별 마스크 반드시 지참 (미착용자 시험장 입장 불가)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기간 내에 사전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는 응시 불가)

<자가격리자 신고 및 응시 신청>

1. 자가격리자 사전신청 기간: 10. 12.(월) ~ 10. 16.(금) 18:00 까지

2. 제출서류: 자가격리자 시험 신청서(붙임4), 격리통지서 사본

3. 제출방법: 전화신청(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 044-300-3044) 후 제출서류 이메일(rlaantjd27@korea.kr) 발송

※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 대상자에게 시험장소 및 시험장 출입방법 등 개별 안내

마.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붙임3)”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바.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당일 오전 **08:00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세종 → 응시표 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하기 바랍니다.

다.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7급)에 한하여 시험시간중 화장실 사용이 1회 허용됩니다.** 아래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안내”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허용되며, 정당한 안내 및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안내(7급 시험) >

-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 상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만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소지,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됩니다.
 -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불가합니다.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장내에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꼭 점검(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하여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위치안내: 붙임1 참조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이어폰 등)와 전자기기(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으로 내 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차.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으나, **나머지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절취 또는 훼손하거나 필사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

직급	직렬	비공개대상 과목	비고
연구사	보건연구(공중보건)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3과목
지도사	농촌지도(농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3과목
9급	공업(일반화공)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3과목

카.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 으로만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문제책의 과목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가 신청한 과목대로 채점되므로 선택과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필기시험일 전일(2020.10.16.)까지 자격이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하며,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2020. 10. 16. 24:00)까지**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 해당 책형 (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 <보기>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이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특점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아.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행위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열람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0. 11. 18.(수) 예정

-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 『시민』 → 『시험정보』 란에 게시

나.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 각각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열람 가능

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044-300-3044)